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중 본청 "918"을 "942"으로, 직속기관 "960"을 "961"로, 출장소 "230"을 "231"로 한다.

부칙(조례 제2180호, 1995. 2. 17) 제3항중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출장소의 증원정원 1명은 1995년 12월 5일부터, 본청의 증원정원 24명과 직속기관의 증원정원 1명의 정원은 각각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